

라오스, 포장 식품의 라벨링 기준에 대한 규정

2009년 3월 18일자 패키지 No. 519/보건부에 포함된 식품 라벨링에 관한 규정 정리

1장

일반 원칙

제1조. 목적 및 목표 수준.

1. 목적

포장에 포함된 식품의 라벨링 및 식품 라벨링에 관한 규칙, 규정 및 다양한 조치를 정의하고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라벨 및 식품이 법에 따라 올바른지 확인하고 식품 생산 사업 단위의 성장을 장려한다..

2. 목표 수준

라오스에서 포장 식품의 생산, 가공, 수입, 수출, 유통 및 보관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 및 검사 지원하여, 포장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함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포장 식품을 생산, 가공, 포장, 수출입 및 유통하는 사업 단위로 제한한다.

제3조 단어의 정의

(Claim) 강조 표시는 원산지, 영양 특성, 특성, 성분, 재료 또는 기타 품질과 관련된 특정 품질의 식품을 알리거나 제안하거나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의미함.

(Best before date) 유효기한의 의미는 정의된 모든 보관 조건 하에서 식품 사용 종료 평가 날짜를 나타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일반 판매가 불가함.

(Expiry date or use by date) 유통기한, 사용 기한은 지정된 보관 조건에서 제품이 신선도와 품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기간, 종료일을 의미함.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 되며, 일반 판매도 금지됨.

(Food)식품은 의약품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먹거나 마시는 신선하거나 잘 익은 것, 날 것 또는 가공된 모든 재료를 지칭함.

(Food product)식품이란 라벨이 부착된 포장 용기에 들어 있는 식품을 의미하며, 생식, 반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분류됨.

(Food additive) 식품첨가물이란 생산, 가공, 처리, 포장, 운송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되는 물질을 의미함. 이러한 첨가제는 영양 품질 및 기타 오염 물질을 포함하지 않음.

(Ingredient) 원료는 식품의 생산, 가공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첨가물을 포함한 모든 물질을 말하며 최종 제품에 존재할 수 있음.

(metric system) 미터법은 길이, 부피 및 무게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미터, 리터 및 그램 단위가 있는 표준 측정 시스템임.

(Imperial system) 임페리얼 시스템은 야드, 피트, 인치를 길이 단위로 사용하는 표준 측정 시스템으로, 갤런(갤런)은 부피의 기본 측정 단위이고 파운드(파운드)는 온스(온스)가 무게의 기본 측정 단위임

(Label) 라벨이라 함은 판매 및 이용촉진을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식품의 용기에 부착 또는 찍히거나 부착되거나 식품에 부착된 라벨, 브랜드, 라벨, 마크, 그림 또는 설명문을 말함. 서면, 인쇄, 인쇄된 이미지를 의미.

(Product name) 식품명은 사용된 재료나 제품의 특성이나 진정한 특성을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일반적인 이름이나 일반적인 설명이 아닌 제조업체의 특정 이름이나 설명을 나타냄.

(Nutrition facts) 영양 표시는 해당 식품에 포함된 영양소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설명임.

(Prepackaged) 포장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할 목적 또는 급식을 목적으로 식품을 조리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된 포장재 또는 개봉하거나 변경하여 내용물을 변형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의미함.

제2장

라벨 및 라벨링 내용

제4조 식품표시

라오스에서 판매 또는 유통하기 위해 생산, 가공, 포장된 식품(화장품 또는 주류 제외)은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해야 함. 라벨은 마크 또는 거래 메커니즘을 표시하는 것 외에도 아래에 정의된 기본 정보도 포함해야 함

음식 이름, 식품 재료 또는 성분, 포장의 무게 또는 부피,

제조업체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보관 및/또는 사용에 대한 지침, 제조일 및 만료일

상표 또는 상표, 식품 제품 등록 번호(있는 경우), 경고(있는 경우)

제5조 라벨에 표시된 내용

1. 모든 포장식품 판매되는 화장품이나 주류를 제외하고 아래에 정의된 대로 올바른 내용으로 라벨링해야 함.

(a) 식품의 이름,

(b) 성분 목록.

1) 식품에 물 외에 2가지 이상의 성분이 있는 경우 다른 성분은 중량비(질량/질량)에 따라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배열하여야 함.

2) 유전자 변형/유전 공학의 일부 기술에서 파생된 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은 유전자 변형 식물 또는 동물(GMO)로 만든 식품과 같이 라벨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3) 식품에 첨가물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또는 종류를 표시하여야 함. 동시에 INS(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를 지정해야 함.

4) 전자조명, 빛 또는 방사선(전리방사선)을 이용하여 처리한 식품원료에 대하여 알려야 함.

5) 식품원료 중 알레르기 반응을 보거나 자주 일으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밀, 호밀, 보리, 귀리와 같은 글루텐을 함유한 곡류 또는 스펠트 또는 그 변종 및 제품;

2. 새우 및 새우 제품;

3. 계란 및 계란 제품

4. 생선 및 생선 제품

5. 콩, 녹두 및 그 제품

6. 우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7. 견과류 및 그 제품

8. 농도가 10mg/kg 이상인 아황산염

(c) 물을 제외한 내용 및 중량

1) 물을 제외한 순함량 또는 중량은 미터법(국제단위계) 또는 미터법과 제국법을 모두 사용하여 보고해야 함.

2) 덩어리로 된 고형 식품의 경우 중량을 기입. 유동식의 경우 부피를 기입. 반고체 식품이나 끈적끈적한 식품의 경우 무게나 부피를 명시해야 함.

(d) 제조, 가공, 포장 또는 유통 시설의 이름과 주소

1) 국내에서 가공·포장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그 생산·가공·포장지 또는 유통업자 또는 저작권자의 명칭과 주소를 신고하여야 함.

2)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자의 명칭·주소·원산지를 신고하여야 함.

3) 식품의 특성이 변경되어 제2국에서 가공한 경우에는 가공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함.

(e) 유통기한 표시 표시, 날짜 및 보관 지침

1) 식품의 유통기한 및 최초섭취일자 및 제조·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유통기한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명확한 문자로 하되 월을 제외한 일·월·연은 숫자로 표시하여야 함. 라벨에 인쇄하거나 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소비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용되는 문자(국제)로 표시해야 함.

2) 식품보관기준의 고시는 식품의 종류별 특성이나 사용조건에 따라 고시해야 함.

(f) 식품의 등록번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하고 유통기한이 있는 등록번호로 등록되어야 함.

(g) 올바른 사용에 관한 지침 필요한 특정 식품의 경우 필수 요건을 포함하여 사용 지침을 통지해야 함.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의 라벨에 사용되는 언어는 라오어 이거나 라오어와 영어가 혼용되어야 함. 수입 식품의 경우 라오어 및/또는 영어 또는 원산지 국가의 언어와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함.

식품명, 순포장, 식품의 제조일자 및/또는 유통기한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되어야 함.

위의 내용은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하며 삭제할 수 없음. 수출용 식품은 라오어와 영어로 작성하거나 수입국이 동의한 대로 작성해야 함.

6. 수출을 위한 특정 요구 사항에 따른 라벨링

1. 다음과 같은 종교적 환경 및 식품 소비 행동에 따라 해당 국가의 특정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표시가 구현될 수 있음

- (a) 식품에 기름이나 식용 기름 또는 둘 다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물질을 제공하는 동식물의 일반 이름을 명시해야 함
- (b) 소, 돼지, 개 등 동물에서 유래한 성분이나 첨가물 및 그러한 동물의 제품은 식품표시에 표시해야 함.
- (c) 식품에 알코올이 첨가된 경우 굵은 대문자 "ALC"로 명시함.
- (d) 종교용으로만 사용되는 식품은 할랄(Halal), 코셔(Kosher) 등 종교로 인정되는 표시나 마크를 표시하여야 함.

2. 해당 국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라벨 및 특정 영양 표시를 제공해야 함..

- (a) 에너지, 육류, 지방 및 전분에 대한 정보.

- (b) 에너지 값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야 함..

100g당 또는 100ml당 kcal 또는;

패키지가 라벨에 명시된 양인 일회성 소비용인 경우 패키지당 kcal 또는

지정된 패키지에 포함된 상자 수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상자당 kcal.

- (c) 식품 내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방의 양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야 함

100g 당 또는 100ml 당 g 또는;

상자가 라벨에 명시된 양인 1회 소비용으로 포장된 경우 상자당 g

- (d)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정량적 정보는 미터법 단위 및/또는 영양가의 백분율로 표시해야 함

100g당 또는 100ml당 또는

패키지가 라벨에 명시된 수량인 1회 소비용으로 포장된 경우 패키지당 또는

제공된 상자당 지정된 포장에 포함된 상자의 수로 표기해야 함

- (e) 영양소는 숫자로 표시해야 함

(f) 섭취에 강조점이 있는 경우 영양소의 양은 100g당 또는 100ml당 및/또는 서빙 당 미터법 단위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g) 영양소 표시는 영양강조표시가 있는 식품의 요건에 따라야 함

영양강조표시, 영양비교강조표시 및 영양기능강조표시는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대한 Codex 지침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도록 허용될 수 있음.

3. 자연식품, 유기농 식품, 유기농 식품 등 라벨에 표시된 제품의 수준과 품질을 나타내는 주장, 기호 또는 기호는 농림부 및 관련 부문의 인증을 받아야 함.

제3장

금지 사항

제7조 청구 금지

다음과 같은 표현 및 주장은 식품 라벨링에 표기 불가

(a) 질병, 결함 또는 기타 신체 상태를 예방, 감소, 치료 또는 치유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의 효능에 대한 주장

(b) 모든 필수 영양소의 적절한 공급원을 제공하는 유효성 주장.

(c) 일반 식품이 적절하게 제공할 수 없는 영양소의 균형을 암시하는 유효성 강조표시.

(d) 유사한 식품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소비자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효과적인 주장.

(E) 허용되지 않았거나 식품에 포함되지 않은 첨가물 또는 영양소의 효능을 주장하는 것.

(S)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성분 또는 그러한 육류나 라드의 제품 또는 첨가 알코올이 있지만 식품에 그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 또는 반대로 쇠고기나 돼지고기 부위의 성분이나 그러한 육류나 라드 또는 첨가된 와인의 제품은 없지만 해당 식품에는 그러한 물질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c) 자사 제품의 효과가 다른 유사한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주장, 이를 증명할 수는 근거는 없는 경우 .

제4장

우수 시행자에 대한 정책과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8조 우수 시행자(성과)에 대한 정책

본 협약 이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법인, 단체는 보건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성과에 따른 적절한 정책을 시행함.

제9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본 약관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각 사안에 따라 교육,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함.

위반 강도 1: 교육하고 경고하며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함.

위반 강도 2: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록을 고려하지 않고 유통, 적발 시 보관 또는 압수하며, 상품가액에 따라 벌금을 부과함.

위반 강도 3: 관련 당사자에게 해당 제품의 생산, 수입 및 유통을 허용하지 말 것을 제안 함.

위반행위는 1, 2, 3을 불문하고 소비자의 건강, 경제,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처벌한다.

제5장

최종 규정

제10조 이행

이 협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부문과의 개발 및 조정을 책임자로 식품 의약품 안전처를 지정함.

제11조. 효력

이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유효하고 유효하며, 이 계약과 충돌하는 모든 계약 및 규정은 제거됨